

●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-258호

「농어촌정비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6월 17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「농어촌정비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농어촌민박 변경사항 신고, 신고확인증 재 교부 등 농어촌관광휴양사업자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보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농어촌민박 신고내용 중 중요 사항만 변경신고(안 제86조제1항)

- 1)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만을 신고하도록 함
- 2) 제86조제1항 후단 중 “신고내용” 을 “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 으 로 수정함
- 3)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만을 신고하도록하여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 시 편의 제공 기대

나. 연계 조항 수정(안 제86조제5항)

- 1) 제86조 제5항 중 “제2항” 을 “제4항” 으로 함

다. 농어촌민박 신고확인증 재교부 신청 절차 마련(안 제86조제10항 신설)

- 1) 신고확인증을 사업장에 게시 못 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절차·서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
- 2) 제86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 - ⑩ 제9항에 따라 농어촌민박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농어촌민박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.

- 3) 신고확인증 재교부 신청 절차 마련으로 신고확인증 미게시 시 처분의 적절성 확보

라.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근거 수정(안 제86조의2제5호)

- 1) 「전기사업법」이 분법되어 안전점검 실시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로 점검 근거 수정
- 2) 제86조의2제5호 중 “「전기사업법」 제66조” 를 “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” 로 함

마.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 설정(안 제90조제1항)

- 1)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 승계 기간(1년)을 명확

히 규정하고, 승계 대상을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수정하여 무기한 승계 방지

- 2)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위 승계를 양도·양수 외에도 상속, 법인합병 등에 따라 가능하므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대상도 연계조항에 따라 수정
- 3)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승계한다” 를 “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” 을 “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” 으로 함

바. 행정제재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90조제4항 신설)

- 1) 위반행위 사실 및 제재처분 전력을 양수인에게 공개하여 원활한 양수·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
 - 2)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- ④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(피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동의를 얻어 제8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(국민참여입법센터)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
- 전자우편: seojin2018@korea.kr
- 팩 스: 044-201-9217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(전화 044-201-1590~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